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4150
등록일자	2016.3.17.
결재일자	2016.3.18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신경하	김정현	代유병선	조인동	03/18 代조인동
협 조				

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



서대문구
정책기획담당관

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 계획

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대상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함

01. 지급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,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~ 제54조의2
- 「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서대문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」

02.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

- 대상기간 : 2015회계연도(2015.1.1.~12.31.)
- 지급대상 :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및 불법·낭비성 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등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
- 지급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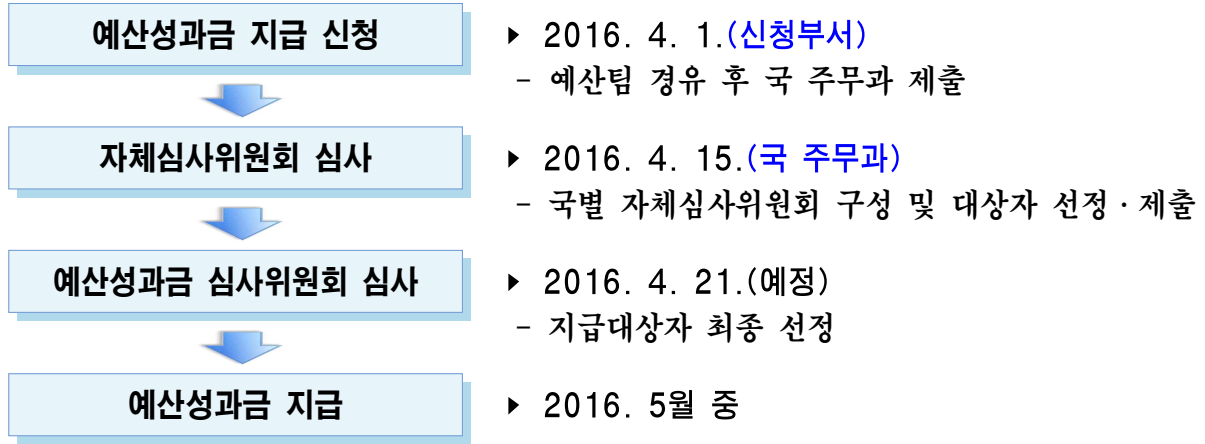
구분	지급요건	비고
필수요건	① 지출절약(수입증대) 기여도	▶ 요건 ①-④ 모두 해당하거나 ①, ③, ④에 해당 하는 경우 성과금 대상 ▶ 요건 ③, ④가 다소 미흡한 경우라도 지출절약(수입증대) 성과가 명백하면 격려금 대상
선택요건	② 제도개선효과	
	③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	
	④ 지출절약(수입증대) 내용의 창의성	

지급기준

구분	예산절감			수입증대
	인건비	경상적 지출 (기본경비)	주요사업비	
성과금규모	감축인원 인건비 1년분	절약액의 10%	절약액의 10% (건당 1억원 이내)	수입증대액의 10%
지급한도	1인당 2천만원 이내, 주요사업 건당 1억원 이내			

03. 세부 추진계획

■ 예산성과금 지급절차 및 시기



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

사전 국별 자체심사	▶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실시 (4.15일까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구성 : 10인 이내(국별 주무과에서 구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장 : 각 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사무국장 - 위 원 : 각 국 소속 5급 및 5급 상당 공무원 ※ 정책기획담당관, 감사담당관, 홍보담당관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국에서 심의 ○ 위원회 기능 : 국별 자체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및 지급대상자 선정 	
본 심 사	▶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구성 : 10인 이내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 원 장 : 부구청장 - 부위원장 : 주민자치국장 - 위 원 : 경제재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환경도시국장, 안전건설교통국장,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- 간 사 : 예산팀장 ○ 위원회 기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-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-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-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-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등 	

■ 소요예산(예산성과금) : 7,000천원

○ 예산과목 : 건전재정운영, 효율적인재정운영, 재정관리제도운영, 포상금, 포상금

※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 : 다음 회계연도 예산 범위내 지급 가능
(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조)

04. 행정사항

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작성·제출 : 4.1(금)까지 예산팀 경유하여 국 주무과로 제출

※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관련 증빙서류 첨부(※증빙서류 미첨부 시 심사 제외)

■ 절약예산 사후 조치

○ 사후조치 시기 및 방법 : 해당부서 및 예산팀

- 연도 중 : 당해 회계연도 감배정 불용 또는 다른 사업 전용

- 익년도 예산 편성 시 : 감액 편성

○ 감액 비율

- 정원을 감축한 경우 : 감축된 인력에 해당되는 인건비 전액

- 정상적 경비(기본경비)를 절약한 경우 : 절약액의 30%

-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: 절약액 전액

- 붙임 : 1.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
2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
3.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
4. 연도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. 끝.